
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토지세목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 고시

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-51호('95.02.18.), 제1998-81호('98.03.14.), 제1998-300호('98.09.15.), 제1996-246호('96.7.26.)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24호('11.01.25.)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444호('14.07.24.)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49호('15.01.30.)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77호('18.03.27.)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515호('19.09.26.)로 (변경)고시된 「대구-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」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(변경)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(변경)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
① 구분	② 종류	③ 노선 번호	④ 노선명	⑤ 위치	⑥ 면적	⑦ 기점	⑧ 종점	⑨ 주요 통과지	⑩ 총연장 (km)
기정	고속 국도	제55호	중앙선 (대구-부산)	대구광역시~ 경남 김해시	6,484,288㎡	대구시 동구 용계동	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	대구광역시 동구, 수성구, 경산시, 청도군, 밀양시, 김해시	82.05
변경	고속 국도	제55호	중앙선 (대구-부산)	대구광역시~ 경남 김해시	6,484,049㎡	대구시 동구 용계동	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	대구광역시 동구, 수성구, 경산시, 청도군, 밀양시, 김해시	82.05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

도로의 확장 및 개량 계획이 없는 구간의 도로구역 내 토지(사유지)에 대하여 도로구역 해제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(변경)

3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: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대구부산고속도로(주)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

- 신대구부산고속도로(주)
 -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로 42-57, ☎ 055-350-2682
-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
 -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, ☎ 051-660-1212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

① 변경 토지세목(변경) 조서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 면적 (㎡)	도 로 구 역 면 적(㎡)				내 용	비 고
					당초	변경	증	감		
1	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	산18-5	임	142	142	-	-	142	도로구역 해제	
2	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	307-6	전	34	34	-	-	34	도로구역 해제	
3	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	307-7	전	63	63	-	-	63	도로구역 해제	

5. 접도구역 지정(변경)내용 : 해당없음

6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 : 해당없음

7. 지형도면 고시(변경) 내용

구분	종류	노선명	구간	연장 (km)	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	비고
변경	고속 국도	중앙선 (대구~부산) 제55호	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산18-5번 지 일원	-	사유지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에 따른 고시	면적 239㎡

8. 지형도면 : 열람장소에 비치
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,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